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 666호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안정적인 가스안전 검사·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삭제하고, 일부 검사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정용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 삭제(안 별표2)

나. 안전서비스 확대를 위한 복지·소규모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면제

기준 마련(안 별표2)

3. 의견제출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0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자원안전팀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명, 대표자명 등),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관 자원안전팀(전화 : 044-203-5184, 팩스 : 044-203-47436)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개정(안)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배관매립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삭제하고, 비고 제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정기검사 수수료를 제외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검사 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와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지로로 시행일 이후에 신청되는 검사 또는 교육은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